

# KOREAN 미시간 주 근로 안전 및 보건법

1974년 개정된 미시건 주 근로 안전 및 보건법 154항에 따라 이 글을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하십시오. 당신이 이것을 하지 않는 경우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미시건 주 내의 피고용인은 1974년 공법 제 154항 미시건 주 근로 안전 및 보건법 (MIOSH법) 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직무환경의 유지를 통해 직업 안전 및 건강을 보호받습니다. MIOSH법과 1973년 9월 미국 노동부에 의해 승인된 주정부 계획에 따라 미시건 주 허가 및 규정 기관 (Department of Licensing and Regulatory Affairs) 은 해당 법을 적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관계자들은 이 보건법과 주정부의 안전 및 보건 기준에 따라 현장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게시물은 MIOSH법의 중요한 조항들을 설명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민간 및 공공 기업의 고용주와 피고용인에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고용주의 의무: MIOSH법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용인에게 직업을 제공하고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손상 등의 산업재해로부터 자유로운 근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2. 해당 법에 의해 발효된 규칙 및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3. 이 게시물 및 기타 공지사항을 통하여 피고용인에게 MIOSH법에 따른 보호 및 의무 사항, 해당 규칙 및 기준 등에 대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4. 피고용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고 발생 8시간 내에 미시건 주 허가 및 규정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의 연락처는 1-800-858-0397 입니다.
5. 피고용인에게 업무관련으로 병원입원, 신체절단, 안구상실이 발생할 경우, 사고 발생 24시간 내에 미시건 주 허가 및 규정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의 연락처는 1-844-464-6742 입니다.
6. 피고용인의 의료 관련 기록을 미리 수집하여 직원 관리 및 보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 고용주의 항소 제기과 관련하여 미시건 주 허가 및 규정 기관과 고용주 간의 회의가 있을 시, 보상의 제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고용인도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만 제기:** 근로환경이 안전하지 않거나 건강에 유해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 피고용인 및 피고용인 대표는 미시건 주 허가 및 규정 기관에 서면으로 감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 현장에 즉각적인 위험 요소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서면보고 외의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불만을 제기한 피고용인의 신원은 비밀로 보장되며, 요청이 있을 시 공개되지 않습니다. 피고용인은 기관의 관계자가 현장 감사나 조사를 실시하는 동안에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용인은 MIOSHA 법에 의거하여 불만을 제기하거나 적법한 권리행사 시 해고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해당 피고용인은 불이익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로 미시건 주 허가 및 규정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MIOSH법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시건 주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MIOSHA)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실행과 관련하여 누구든 불만이 있는 경우 다음의 주소로 서면 제기 할 수 있습니다. [Regional Office of OSHA, 230 South Dearborn, Chicago, Illinois 60604]

**경고장 발부:** 만약 미시건 주 허가 및 규정 기관의 현장 감사 및 조사 과정에서 MIOSHA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경고장이 발부되며, 해당 위법 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경고장은 위법 장소 혹은 그 주변에 3일간 혹은 위법 사항이 수정될 때까지 (둘 중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함) 게시되어야 합니다.

해당 법 최초 위반 시에는 최고 \$7,000 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주어진 기간 내에 위법 사항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1일당 최고 \$7,000의 벌금형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도적 혹은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 각 위반 사항마다 최고 \$70,000 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해당 위법 사항이나 부과된 벌금, 위법 사항 수정 기간에 대하여 미시건 주 허가 및 규정 기관과 보건 및 안전 준수 · 항소 위원회 (the Board of Health and Safety Compliance and Appeals) 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피고용인도 마찬가지로 위법 사항 수정 기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용인은 자신의 고용주가 항소 하였을 때 이에 맞서 미시건 주 허가 및 규정 기관이 내리는 결정에 대하여 보건 및 안전 준수 · 항소 위원회에 따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8. 고용주는 미시건 주 허가 및 규정 기관의 관계자가 현장 감사나 조사를 실시할 때 피고용인 대표가 동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대표가 감사 · 조사 · 회의에 참여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및 기타 혜택을 보장하고,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9. 고용주는 MIOSH법 기준에 근거하여 피고용인에게 고용주 부담으로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10. 고용주는 미시건 주 허가 및 규정 기관의 명령 하에 즉각적인 위험 요소가 있다고 여겨질 때 즉각적인 위험을 방지하고 교정하거나 제거하기위해 현장에 꼭 필요한 자를 제외하고 누구든 해당 장비를 다루게 하거나 업무를 시켜서는 안됩니다.
11. 만약 피고용인이 MIOSH법에 의해 지정된 기준치를 넘어서는 수준의 독극물이나 기타 물질에 노출된 경우, 고용주는 즉각적으로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피고용인의 의무:** MIOSH법에 따른 피고용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시건 주의 피고용인들은 MIOSHA 법에 의거하여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 피고용인은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 장치를 제거 · 대체 · 이동 · 손상 해서는 안되며, 해당 장치를 타인이 사용함에 있어서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감사 및 조사:** 현장 감사 및 조사는 숙련된 직원에 의하여 실시됩니다. 고용주 대표와 피고용인 대표는 MIOSHA 법에 의거하여 기관의 관계자와 동행하여 감사 및 조사 과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피고용인 대표가 감사 및 조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기관의 관계자는 다수의 피고용인들과 현장의 안전 혹은 보건 문제에 대하여 상의할 것입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술하거나 보고하는 경우 최고 \$10,000 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과 금고형이 모두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법 사항이 원인이 되어 피고용인이 사망할 시 최고 \$10,000 의 벌금형 혹은 1년 이하의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과 금고형이 모두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범의 경우 벌금 액수는 최고 두 배가 되며, 3년의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활동 및 준수 지원:** MIOSHA 법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자발적으로 근로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을 장려합니다.

미시건 주 허가 및 규정 기관은 고용주들이 근로 안전 및 보건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제한된 범위의 상담을 제공합니다. 기관에서 파견된 교육 전문가로부터 근로 환경의 위험 요소 제거와 안전 및 보건 체계 구축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와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근로 안전 및 보건 관련 세미나 혹은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아래의 주소로 연락하십시오.

미국 노동부는 연안 어업 · 조선업 · 선박 해체업 · 선박 수리업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것입니다. 전술한 업종은 미시건 주 근로 안전 및 보건 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문의:**

Department of Licensing and Regulatory Affairs  
 Michigan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530 W. Allegan Street, Box 30643  
 Lansing, Michigan 48909-8143  
[www.michigan.gov/miosha](http://www.michigan.gov/miosha)

## 중요한 문서이니 다른 게시물로 가리지 마십시오.



- MIOSHA 불만제기 상담 ..... 1-800-866-4674
- 사망 사고 상담 ..... 1-800-858-0397
- MIOSHA 부상/질병 보고 ..... 1-844-464-6742
-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 1-517-284-7720

